

안료

I 사례 개요

- 사 례 번 호: NY N359464 (2026.03.26.)
- 쟁 점 사 항: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
- 최종 수출국: 멕시코
- 최종 원산지: 인도 및 멕시코



II 사실관계

용도	• 착색용		
재료		인도	• 안료 A
		멕시코	• 안료 B
Sourcing 및 공정 흐름도	Sourcing ▾  인도  안료 A 생산 Manufacturing ▾  멕시코  STEP 1 인도산 안료 A 수입 STEP 2 안료 B 생산 STEP 3 안료 A와 B 혼합 STEP 4 포장 Export ▾  멕시코 최종 수출		
상세 공정		인도	- 다음의 재료로 구성된 안료 A 생산 - Fast Bordo GP Base(CAS 96-96-8) - Acetoacet-o-anisidide(CAS 92-15-9) - 비반응성 첨가제
		멕시코	- 다음의 재료로 구성된 안료 B 생산 - Fast Bordo GP Base(CAS 96-96-8) - Acetoacet-o-anisidide(CAS 92-15-9) - 비반응성 첨가제 - 인도산 안료와 멕시코산 안료를 혼합하여 최종 안료 생산
	기타사항		• 최종제품은 인도산 안료 49%, 멕시코산 안료 51%로 구성되어 있음

III 판정 결과

《CBP의 판정》

- ⊙ 인도 및 멕시코에서 생산된 안료는 멕시코에서 단순히 혼합되었을 뿐이며, 각 원재료별로 어떠한 화학적 변화나 기능·용도 상의 변화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, 이에 따라 최종제품에는 인도와 멕시코를 함께 표시해야 함

→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인도 및 멕시코임

Ⅳ 시사점

- ⊙ CBP는 화학적 변화나 기능·용도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혼합을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유사 사례에서도 거친 형태의 안료를 더 작고 균일한 입자로 만드는 공정에 대해 화학식, 세분 및 특성이 변형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지 않음

CBP의 참고 판정 사례

물품명	안료
사례번호	HQ H113256 (2010.12.27.)
쟁점사항	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
사실관계	• [기타국가] - 거친 형태의 안료(CVP-23) 생산 • [일본] - 조제 소금, 수용성 유기용매를 첨가하여 혼련, 여과 및 건조 작업 수행 - 완성된 안료(CVP-23)는 수입 당시 안료보다 더 작고 균일한 입자를 가짐
신청인의 주장	• 화학구조의 변화가 없더라도 가공 결과, 새로운 명칭·특성·용도를 가진 물품이 되면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수 있음 • 일본에서의 공정은 단순 정제가 아니라 입자의 크기와 균일성을 변화시켜 안료로서의 성능을 본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공정임 • 이러한 입자의 변화로 인해 완성 CVP-23은 착색력, 색의 깊이, 투명도, 점도, 광택 등 성능이 개선되며, 상업적인 용도 또한 달라짐
판정 결과	• 거친 형태의 CVP-23과 일본에서 가공 후 완성된 CVP-23은 동일한 분자식, 동일한 CAS 번호, 동일한 화학명, 세분을 가진다는 점에서 화학적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음 • 또한, 일본에서의 공정을 통해 입자 크기와 균일성이 개선되고 착색력이 향상되더라도, 이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바꾸는 변화가 아니라 성능 개선 또는 정제에 가까운 변화라고 판단 • 거친 상태의 CVP-23이 상업적으로는 바로 사용되기 어렵더라도, 여전히 완성 안료의 본질적 기능인 착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, 일본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은 발생하지 않음

유의사항 :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(원재료, 제조공정 등) 및 최종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